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46
----------	------

2020년 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윤기 의원 외 42명
- 나. 제안일 : 2020년 7월 13일
- 다. 회부일 : 2020년 7월 14일
- 라. 상정일 : 제27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윤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용제한 규정의 범위를 변경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0.7.17. ~ 7.24.)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이나 집단을 특정하여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사용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u>자</u> 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1. <u>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u>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성년자 3. <u>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u> 4. <u>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u> 5.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시장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자</u>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u>사람</u> 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1. <u>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u>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5.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시장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사람</u>

※ 2020년 4월 2일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영역에 대한 사후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근거로 시민의 문화권 보호를 위한 입장 및 이용 제한을 두는 8개 조례에 대해 개정을 권고하였음.

개정권고의 대상 : 서울특별시립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립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평생교육국에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이하 '서울 캠핑장')은 강원(2개소), 경북(2개소), 경기(1개소), 충북(1개소), 충남(1개소), 전남(1개소) 등의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으로 총 8개소를 운영 중임.

〈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서울캠핑장) 현황 〉

총 8개소, 165면

구분	횡성 별빛마을	포천 자연마을	제천 하늘뜨레	철원 평화마을	서천 금빛노을	함평 나비마을	봉화 솔향가든	상주 감꽃마을	
폐교명	월현분교	사정분교	송한분교	유곡분교	장선초교	성남초교	황평분교	용포분교	
폐교일	1995년	1992년	1993년	1996년	1999년	2002년	2015년	2015년	
위치	강원 횡성군 강림면 주천강로 488	경기 포천시 관인면 북원로길 371-115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543	강원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512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산리 128-3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성남리 215	경북 봉화군 소천면 흥길길 31	경북 상주시 낙동면 선상서로1587	
규모	부지면적	7,547㎡	9,787㎡	6,754㎡	14,801㎡	3,477㎡	16,394㎡	6,350㎡	11,902㎡
	건물면적	730㎡	649㎡	810㎡	440㎡	603㎡	480㎡	135.12㎡	562㎡
	데크개수	20면	25면	20면	25면	15면	20면 (자동차야영장)	20면 (자동차야영장)	20면 (자동차야영장)
	수용인원	80명(일)	100명(일)	80명(일)	100명(일)	60명(일)	80명(일)	80명(일)	80명(일)
	임대기간 (임대료)	10년 (3,996천원/년)	5년 (2,753천원/년)	5년 (3,666천원/년)	5년 (무상)	5년 (무상)	5년 (4,339천원/년)	5년 (무상)	5년 (무상)
조성기간	'13.3.25~'7.1.	'14.5.13~'7.11.	'15.7.22~'9.19.	'15.7.23~'10.11.	'16.9.28~'11.26.	'16.9.28~'12.12	'17.11.2~'3.26	'18.10.23~'12.21	
조성비용	275백만원	502백만원	455백만원	488백만원	160백만원	563백만원	521백만원	516백만원	
개장일	2013.7.6.	2014.7.19.	2015.9.25.	2016.6.25	2017.3	2017.3	2018.6.29	2019.4예정	
등록일	2015.4.2.	2015.5.22.	2015.12.11.	2015.12.7.	2017.4.25	2017.1.25	2018.6.21	2019.4 예정	
운영기간	매년 3~11월								
주요 시설	야영장	데크 20면	데크 25면	데크 20면	데크 25면	데크 15면	데크 20면	데크 20면	데크 20면
	교실	바둑실, 북카페, 나무물리학체험실	바둑실, 북카페, 시청각실, 탁구장	바둑실, 탁구장	바둑·독서실, 탁구장	독서실, 탁구장	바둑·독서실, 탁구장, 유아놀이방	바둑·독서실, 탁구장, 당구장	바둑실, 독서실, 탁구장, 당구장
	운동시설	족구장배드민턴장 2면	족구장배드민턴장 2면	족구장배드민턴장 1면	족구장배드민턴장 2면	-	족구장배드민턴장 2면	-	-
안전관리	CCTV 4대	CCTV 4대	CCTV 4대	CCTV 4대	CCTV 4대	CCTV 4대	CCTV 5대	CCTV 4대	
편의 시설	상하수도	지하수	지하수	지하수	지하수	상수도	상수도	상수도	지하수
	전기시설	20kw	20kw	20kw	20kw	20kw	30kw	30kw	67kw
	화장실	2동(남1, 여1)	2동(남1, 여1)	2동(남1, 여1)	2동(남1, 여1)	2동(남1, 여1)	2동(남1, 여1)	4동(남2, 여2)	4동(남2, 여2)
	취사시설	화덕, 테이블	화덕, 테이블	화덕, 테이블	화덕, 테이블	화덕, 테이블	화덕, 테이블	화덕, 테이블	화덕, 테이블
	소화기	25개(데크20, 교실5)	27개(데크25, 교실2)	24개(데크20, 교실4)	30개(데크25, 교실5)	15개(데크15)	23개(데크21, 교실2)	28개(데크20, 교실8)	31개(데크22, 교실9)
	방송장비	엠펙 마이크 스피커	엠펙 마이크 스피커	엠펙 마이크 스피커	엠펙 마이크 스피커	엠펙 마이크 스피커	엠펙 마이크 스피커	엠펙 마이크 스피커	엠펙 마이크 스피커
	안전개물	현수막, 리플릿	안내문, 리플릿	안내문, 리플릿	안내문, 리플릿	안내문, 리플릿	안내문, 리플릿	안내문, 리플릿	안내문, 리플릿
	대피공간	학교교실	학교교실	학교교실	학교교실, 방공호	쌀문화센터	학교교실	학교교실	학교교실
	진입로	콘크리트(폭4m 연장80m)	아스콘(폭4m 연장80m)	아스콘(폭6m 연장100m)	콘크리트(폭7m 연장100m)	콘크리트(폭7m 연장80m)	아스콘(폭4m)	마사토(폭6m)	마사토(폭6m)
	주차시설	20대	25대	20대	26대	18대	23대	20대	20대
기타	관리사무실, 안전펜스	관리사무실, 안전펜스	관리사무실, 안전펜스	관리사무실, 안전펜스	관리사무실, 안전펜스	관리사무실	관리사무실	관리사무실	

○ 가족자연체험시설은 시민들에게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야영장이외에 야외 운동시설, 가족놀이 공간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운영 후 개장하지 못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시민의 문화권 보호하고, 서울시 각 조례별 제한대상의 범위를 일치시키고자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 본 조례의 일본식 한자표현 : 자(者) → 사람

○ 안 제6조제1호는 시설의 사용제한 규정으로 현행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현행 조문 및 개정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제1호의 현행과 개정안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제한) (생략) 1. <u>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u>	제6조(사용제한) (생략) 1. <u>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 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u>

- 현행 제6조제1호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은 사회질서의 하나로 평화 유지를 위해 국민의 지켜야 할 일반 규범이나, 이러한 일반 규범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정의 모호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 안 제6조제1호의 전단(‘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은 법리, 질서유지, 다른 이용객의 권리 및 편익 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고 보이나, 후단(‘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판단의 주체가 모호하며, 타인의 권리 및 사회공익에 침해가 없는 상태에서 ‘우려’만으로 사용제한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기술적 관점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줄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만으로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으며, 현행 법령은 범죄의 예비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제6조제1호는 법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형법」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죄(예비음모를 인정하는 죄)

- 개인법익에 대한 죄(6개) : 살인죄, 강도죄, 촉탁살인죄, ‘악취, 유인 및 인신매매죄’, 폭행예비죄.
- 국가법익에 대한 죄 : 내란죄, 외환죄, 통화위조죄, 교통방해의 죄 등

○ 안 제6조제3호는 ‘위험물, 악취, 혐오’ 물품을 소지한 자의 이용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단순히 이러한 물품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볼때, 일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현 행	개 정 안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삭 제>

- 위험물의 경우,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로 인해 강화된 열차 내 반입금지 물품 규정과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의 지정 사유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물을 휴대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권 보호, 차별 금지, 개인 및 사회의 안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50대 남성이 휘발류에 불을 붙여 2개의 열차(1079열차, 1080열차, 총 12량)가 전소하고, 192명 승객이 사망, 148명 부상 당한 사고. 초기대응 미흡, 조직적 사건 축소 및 은폐로 피해가 확대된 사고.

※ 열차 반입금지 물품

「철도안전법」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積載)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누구든지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항공보안법」 제21조(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 된다.

- 안 제6조제4항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시설 사용제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목적인 문화권 보호와 함께 사회적 안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삭 제>

- ‘감염’은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서 증식하는 것에, ‘전염’은 전파, 옮아가는 것 등에 사용하는 용어이고, 감염은 되나 전염성이 없는 질병(말라리아)이 있는 반면, 전염성과 치명률이 높은 질병도 존재하는 바, 법령은 위험성에 따라 감염병을 구분하고, 다시 치명율과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는 이러한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를 특정하여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전염과 감염

- 감염(Infection, 感染) : 병원성 미생물이 숙주가 되는 생물체의 체내에 침입하여, 발육·증식한 상태.
- 전염(contagion, 傳染) 1. 병이 남에게 옮음. 2. 다른 사람의 습관, 분위기, 기분 따위에 영향을 받아 물이 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3.~20. (생략)

- 본 개정안은 시민에게 차별적인 조항을 삭제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토록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전염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감염병마다 위험도가 다양하나, 본 개정안은 감염병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전염병은 개인, 사회,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시민의 문화권 보호를 위해 전염병 환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권고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감염과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자연체험시설이 폐쇄 상태이며, 이에 세입감소 및 예산의 불용,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서울시의 역할(전염병 환자를 격리하거나 입원·진찰시켜야 할 의무)과 본 개정안의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평생교육국은 민원, 예산, 사업추진, 위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사유를 청취하여 심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중략)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중략)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중략)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략)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중략)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중략)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 교육정책과의 본 개정안 관련 검토의견 〉

의안번호
1646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서윤기 의원 외 42명	'20.7.13.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취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 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 (개정내용)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제한 규정의 범위를 변경(안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1호 문구 개정, 제3호 및 제4호 각각 삭제 		
추진경과	○ 입법제고 : '20.7.17. ~ 7.24.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발생 여부 : 없음 ○ 예산관련 문제 : 없음 ○ 사업추진 지연이나 위법성 : 없음 		
대응방안	○ 해당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교육정책과	팀장	담당

- 안 제6조와 제6조제5호는 일본식 표현인 ‘자(者)’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으면 널리 쓰는 한자어로 순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미상, 내용상, 형식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표현법(용어)을 우리말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8판, 40p 발췌)

자(者) → 사람, 자

-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고쳐 써야 한다.
- ‘자’가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 ‘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46
----------	------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13일

발 의 자 : 서윤기, 김동식, 박기재, 정진철,
김기대, 김제리, 봉양순, 임만균,
정재용, 임종국, 양민규, 이정인,
유정희, 박기열, 오현정, 전병주,
이상훈, 김화숙, 황인구, 장상기,
오중석, 최 선, 채인묵, 장인홍,
이태성, 추승우, 이동현, 전석기,
노식래, 노승재, 김경영, 김희걸,
권순선, 문병훈, 김수규, 김광수,
유 용, 송도호, 최영주, 문장길,
최정순, 홍성룡, 김경우 의원(4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제한 규정의 범위를 변경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u>자</u>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p> <p>1. <u>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u></p> <p>2. (생략)</p> <p>3. <u>위험물이나 약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u></p> <p>4. <u>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u></p> <p>5.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시장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자</u></p>	<p>제6조(사용제한) ----- ----- <u>사람</u>----- ----- -----, 1. <u>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u></p> <p>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5. ----- ----- ----- ----- <u>사람</u></p>